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 기 열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새누리당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남 창 진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

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○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」 제1조 중 “신고하는 자”를 “신고하는 사람”으로, 제2조 제1호 중 “경영하는 자”를 “경영하는 사람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등록을 한 자”를 “등록을 한 사람”으로 하는 등 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”에 따른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